

	<b>교무학사운영위원회규정</b>	규정번호	3-8-4
		제정일자	2015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교무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교원인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사제도 및 학사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필요에 따라 총장이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위원회, 업무관련부서와 연구소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